



원산지관리, 현장의 목소리

FTA 활용 시 원산지증빙서류 보관의무의 중요성

강태우 | 대흥합동관세사무소, 대표관세사

E REPORT

FTA 활용 시 원산지증빙서류 보관의무의 중요성



강태우
대홍합동관세사무소
대표관세사

1 개요

FTA 협정을 통해 특혜를 적용받으면 해당 협정관세의 적용 여부와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국내의 수입자·수출자·생산자 및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계약상대국 수출자·생산자를 대상으로 원산지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원산지 검증이라고 한다.

원산지 검증 시 기관의 요청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증빙서류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검증기관의 요청에도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가 미비하여 원산지 증명서 내용을 입증하지 못할 때 협정관세 적용이 제한, 과태료 처분, 벌금형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으므로 FTA를 활용할 때는 원산지증빙서류를 정해진 기간 동안 반드시 보관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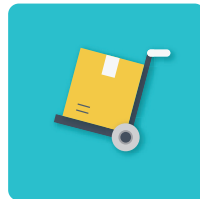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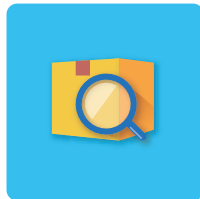
원산지증빙서류의 보관은 FTA를 활용하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이므로 보관의무 규정과 규정 위반 시 어떠한 제재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2 원산지증빙서류 보관의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와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한 수입자는 FTA특례법 제15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빙서류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된 기한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5조

수입자·수출자 및 생산자는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필요한 것으로서 원산지증빙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협정에서 정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3 보관 대상 원산지증빙서류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입증하기 위한 원산지증빙서류는 아래의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자료에 한정하지 않고 검증 대상에 따라 증빙자료의 종류 및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며, 제시된 증빙자료 외 기타의 자료 및 방법으로도 원산지임을 증빙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시행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서류의 종류를 기준으로 하되 그 대상에 따라 원산지임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료를 추가로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FTA특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각각의 주체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수입자가 보관해야 하는 서류

가.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 다만, 협정에 따라 수입자의 증명 또는 인지에 기초하여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는 경우로서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입물품이 협정관세의 적용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나. 수입신고필증

다.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라. 지식재산권 거래 관련 계약서

마.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자료

바. 수입물품의 국제운송 관련 서류

사. 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서(이하 "사전심사서"라 한다) 사본 및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사전심사서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수출자가 보관해야 하는 서류

가. 계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

나. 수출신고필증

다.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라. 해당 물품의 구입 관련 증빙서류 및 출납·재고관리대장

마. 생산자 또는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수출자에게 제공한 서류

3. 생산자가 보관해야 하는 서류

가. 수출자 또는 계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해당 물품의 원산지증명을 위하여 작성·제공한 서류

나.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생산자의 명의로 수입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다. 수출자와의 물품공급계약서

라.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가 해당 재료의 원산지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생산자에게 제공한 서류

마. 해당 물품 생산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

바. 원가계산서·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사.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재고관리대장

4 보관의무 위반 시 제재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FTA 활용을 위한 원산지 증명서는 발급과 함께 그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원산지 검증 시 검증기관에서는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을 요청하고 있으며, 요청이 있으면 수출자 또는 생산자와 수입자는 요청된 기한 내에 원산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검증기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가 미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되었을 때는 FTA특례법과 각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 배제 등 제재를 받게 된다.

1. 협정관세 적용 배제

FTA특례법 제35조에 따라 다음 등에는 협정관세의 적용이 제한되며,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 3 제6항 및 제39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수입자, 계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요청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② 계약상대국 수출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산지증빙서류의 확인에 필요한 장부 또는 관련 자료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접근을 거부하거나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③ 수입자 또는 계약상대국 수출자 등이 제출한 자료에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④ 조사 결과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벌금(2,000만 원 이하)

FTA특례법 제44조 ①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 등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금형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이 적용된다.

- ① 협정 및 특례법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발급받았거나 작성·발급한 자
- ② 정당한 사유 없이 특례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 ③ 특례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청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과태료(1,000만 원 이하)

FTA특례법 제46조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① 정당한 사유 없이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② 특례법 제17조 제1항 및 제18조 제1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결론

FTA 활용이 어려운 것은 업무의 영역이 단순히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발생할 수 있는 원산지 검증에 미리 대비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원산지 검증을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그 중요성을 체감하기 어렵지만 원산지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모의검증을 수행함으로써 간접적으로나마 체감할 수 있다.

원산지증빙서류의 보관은 원산지 검증을 대비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인증 수출자를 활용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매년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지만, 원산지 검증 시 서류

제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래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원산지 검증 시 그 내용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그동안 받은 특혜를 돌려줘야 해서 업체가 받는 경제적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또한 향후 협정 적용을 배제당하여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면 그로 인한 경쟁력 상실이 발생할 수 있다.

원산지증빙서류 보관의무를 준수하고 주기적으로 현황을 점검함으로써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는 발생할 수 있는 원산지 검증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한다.